

안전점검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

즉시

대표자

(전화:)

등록일자

☐ 안전진단전문기관 ☐ 안전점검전문기관

제출처

부

시설물의 형식
및 규모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.

이
예
제

(서명 또는 인)

국토안전관리원 귀하

수수토

법 제6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수료